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73
----------	-------

발의연월일 : 2026. 1. 6.

발 의 자 : 신정훈 · 채현일 · 문금주
전용기 · 김문수 · 이정문
문대림 · 안태준 · 김영환
황명선 · 소병훈 · 박주민
이연희 · 조승래 · 백승아
최혁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국민과 사회가 함께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헌법상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민총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모든 국민의 기본권

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기본사회의 기본방향으로 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기본서비스의 제공, 국민 참여·사회연대경제 및 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와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 단위로 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12조).
- 마.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 1)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조정·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함.

2)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위촉위원은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3) 기본사회위원회는 심의·조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육·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서비스”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등의 분

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정보 제공,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등록된 조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그 지

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개인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본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본사회 관련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제7조(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공동의 생산 활동을 통하여 창출하는 수익을 이에 기여한 국민들과 공유하거나 지역에 환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기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달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에 힘써야 한다.

제9조(국민 참여와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기본사회 종합계획 등

제12조(기본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16조에 따른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기본사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사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2장에 따른 기본사회 기본방향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사회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기본사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문별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

당 기관의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기본사회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6조에 따른 기본사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도별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기본사회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0조에 따른 시·도 기본사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기본사회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기본사회 기본방향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기본사회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제16조에 따른 기본사회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기본사회위원회는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기본사회위원회 등

제16조(기본사회위원회) ①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사회 실현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3장의 기본사회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사회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사회 관련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2. 위촉위원: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분과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시·도 기본사회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기본사회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기본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도 기본사회위원회, 시·도 기본사회지원단 및 시·군·구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기본사회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사회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심의·조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법인·단

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사회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사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위원회는 전년도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기본사회 기본방향에 관한 정책의 추진 현황, 성과 및 향후 계획
2. 제3장에 따른 기본사회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관리
3. 그 밖에 기본사회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장 보칙

제25조(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 등) ①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수립·분석 및 관리,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수집·분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 등에 따라 새로운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위촉, 사무기구의 설치행위 등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